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5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3. 11. 16.

제안자 :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장

## 1. 위원회안의 제안경위

- 제321회 정례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(2023.11.16.)는 옥재은 의원이 2023년 8월 14일에 발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에 회부된, 의안번호 제1077호 「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, 이소라 의원이 2023년 8월 14일에 발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에 회부된, 의안번호 제1023호 「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과 관련하여, 이를 토대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조정한 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위원회안의 제안이유

- 출산율 제고 및 양육환경에 놓여있는 가정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,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에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에서 주택을 임차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

고 있는 가운데 청년,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하여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위원회안의 주요내용

- 가.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 제1호의2 신설)
- 나. 청년,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 제1호의3 신설)

#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1의3. 청년,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